

1. 개정이유

투자·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중소기업과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선제적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제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단서 중 “건축물을”을 “건축물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로 한다.

제2조(「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휴업을 신고한 여행업자의 경우에는 휴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의 휴업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휴업을 신고한 여행업자의 경우에는 휴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의 기획여행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호텔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120일

별표 8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법 제5조제3항 및 이 규칙 제8조제1항제1호바목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의 영업 종류에 규정되지 않은 영업 종류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본문 중 “한다”를 “한다(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5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
2.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기존 계약조건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경우

제6조(「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9제1항”을 “법 제21조의9제1항 및 영 별표 1의6”으로, “나무병원으로 등록한”을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한”으로, “다른 종류의”를 “폐업 후 1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의6제2항제1호 중 “제출한”을 “제출한 폐업 연도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직전”을 각각 “폐업 연도 또는 직전”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12 서식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의 신청인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첨부서류	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 제21조의9제1항 및 영 별표 1의6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 당해 또는 직전 연도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폐업 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폐업 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	--

제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림 자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를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로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7조 본문 중 “이내에”를 “이내에(다만, 해당 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 10월 18일 이후 실시하는 정밀정기검사 실시 전까지)”로 한다.

제9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대한 신규”를 “대하여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신규”를 “제2항에 따른”으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를 “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규”를 “제2항에 따른”으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를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과 같은”을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별표 14 제5호나목4)가) 단서 중 “건축물을”을 “건축물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로 한다.

제10조(「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교육기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운영상 제약으로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기관, 대학 등의 교육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하려는 교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호에 따른 교육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1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비고 제7호 중 “2.0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2.0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경형·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보유 자동차 대수에 가중치 2.0을 곱하여 산출한 값”으로 한다.

제12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장 또는 개설자가 변경되거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적은 문서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영업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영업소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체이식형 의료기기(3등급·4등급으로 한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인 의료기기(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기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 연번	② 공급자 영업 형태	③ 공급 구분	④ 공급 형태	공급받은 자			⑧ 제조(수입)허가 ·인증·신고번호	⑨ 분류 번호	⑩ 품목 명	⑪ 모델 명	⑫ 표준코드 (UDI-DI)	⑬ 제조 번호		⑭ 제조 연월 또는 사용기한		⑮ 포장 단위	⑯ 포장 단위 수량	⑰ 공급 수량	⑱ 공급 일자	⑲ 공급 금액 (부가	⑳ 공급 단가 (부가	비고	
				⑤ 상호	⑥ 사업	⑦ 요양기관						제조 단	일련 (Ser	제조 연	사용 기								

태			또 는 명 칭	자 등 기 록 번 호	기 호						위 번 호	ial) 번 호	월	한					가 치 세 포 함)	가 치 세 포 함)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1) 상호:
- (2) 허가(신고) 번호:
- (3) 사업자등록번호:
- (4)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8호의2서식 뒤쪽 제21항을 삭제하고, 같은 뒤쪽 기호(*)를
삭제한다.

제13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1쪽 ⑮ 분할납부 신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 분할납부 신청 (택1 ☒)	4기□	4-1기분(1.31.)		4-2기분(4.30.)		4-3기분(7.31.)		4-4기분(10.31.)	
		원		원		원		원	
	6기□	6-1기분(1.31.)	6-2기분(3.31.)	6-3기분(5.31.)	6-4기분(7.31.)	6-5기분(9.30.)	6-6기분(11.30.)		
		원	원	원	원	원	원		

별지 제12호서식 2쪽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분할납부 신청 중 14
번에 “4기”를 “4기 또는 6기”로 하고,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1쪽 ㉔ 분할납부 신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㉔ 분할납부 신청 (택1 ☒)	4기□	4-1기분(1.31.)		4-2기분(4.30.)		4-3기분(7.31.)		4-4기분(10.31.)	
		원		원		원		원	
	6기□	6-1기분(1.31.)		6-2기분(3.31.)		6-3기분(5.31.)		6-4기분(7.31.)	
		원		원		원		원	

별지 제15호서식 3쪽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분할납부 신청 중 28
번에 “4기”를 “4기 또는 6기”로 한다.

제14조(「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16조(「지하수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해당호의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비고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허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17조(「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의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 전단 중 “하며”를 “하며(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한다.
- 제18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4 제2호사목의 시설기준란 중 “나무울타리”를 “울타리”로 한다.
- 제19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0 제7호다목1)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별표 10 제7호다목1)에 가),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어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나) 축산물운반용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인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으며”를 “같으며(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21조(「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7 비고 제8호 중 “2022년 6월 30일까지”를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3회 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별표 1의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허가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유효기간)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 14 –

<u>(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u> 4. · 5. (생략) ③ · ④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16 –

②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의 휴업기간은 제외
한다.---.

[illegible]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 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 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 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 ----- ----- ----- ----- --- <u>한다(2024년 7월 1일부터 2 026년 6월 30일까지 자격증 발 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u>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생략)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이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u>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u> 2. <u>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기존 계약조건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경우</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21 –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 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u>직전</u> 연도의 재무제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 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 은 <u>직전</u> 연도의 재무제표 ③・④ (생 략)	----- ----- -- 2. ----- ----- ----- <u>폐업 연도 또</u> <u>는 직전</u> ----- ----- 3. ----- ----- ----- ----- -- <u>폐업 연도 또는 직전</u> ---- ----- ③・④ (현행과 같음)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산림소유자가 <u>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u>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 11. (생략) ② (생략)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u>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u> ----- ----- ----- ----- ----- ----- ----- -----. 4.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교육시간) ①·② (생략)	제52조(교육시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③ 제2항----- ----- ----- ----- 대하여 제2항에 따른 ----- --. 이 경우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1. 제2항에 따른 ----- 자가 ----- ----- ----- ----- -----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2. 제2항에 따른 ----- 자가 ----- ----- ----- -----

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
업을 하려는 경우

가. ~ 라. (생 략)

3. 4.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
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
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 · 신고관청 · 등록관
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가. ~ 라. (생 략)

<신 설>

가. ~ 라. (현행과 같음)

3. 4.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 · 광역
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
치도의 -----

가. ~ 라. (현행과 같음)

3.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
육을 받은 자가 영 제21조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

⑤ (생략)	<u>는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u> <u>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u> <u>함께하려는 경우</u> ⑤ (현행과 같음)
--------	---

고 등) ① (생략)

<신설>

② ~ ⑥ (생략)

제54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등급·2등급 의료기기: 다음

각 목의 의료기기

가. 중고로 수입하였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로 구입하여 유통한 의료기기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영업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영업소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54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① -----

-----.

1. 인체이식형 의료기기(3등급·4등급으로 한정한다)

<u>대상 치료재료인 의료기기</u> <u>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u> <u>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u> <u>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기</u> <u>2. 3등급·4등급 의료기기: 모든</u> <u>의료기기</u> <u><신 설></u> ②·③ (생 략)	<u>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u> <u>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u> <u>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치료</u> <u>재료인 의료기기(의료기관에</u> <u>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u>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u> <u>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u> <u>여 정하는 의료기기</u> ②·③ (현행과 같음)
--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①(생략)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①(현행과 같음)
1.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1. ----- ----- ----- ----- ----- <u>.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u> <u>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이수할 수 있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1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 방법 등) ①(생략)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의지·보조기 기사: 의지·보조기 기사를 회원으로 하여 의지·보조기 관련 학문·기술의 장려,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2. ~ 3 (생략) ③ (생략)	제61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 방법 등) ①(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 -----. 1. ----- ----- ----- ----- ----- ----- ----- - <u>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이수할 수 있다.</u>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을 하려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u>하며</u> , 국내 유료직업소 개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 우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 우에는 무료로 한다. 이 경우 국 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수수료) ----- ----- ----- ----- <u>하며(다만, 2024년 7월 1</u> <u>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유</u> <u>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을</u> <u>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한</u> <u>다)</u> ----- . ----- ----- ----- -----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u>같으며</u> ,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 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 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 료로 한다. 1. ~ 3. (생략)	제20조(수수료) ----- ----- <u>같으며(2024년 7월 1일부터 202</u> <u>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u> <u>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u> . -----. 1. ~ 3. (현행과 같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생략)	제38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영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3회 이하로 한다. --- ----- ----- -----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1. <u>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u>	<삭 제>
<u>2회 이하</u>	
2. <u>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u>	<삭 제>
<u>3회 이하</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